

 신안산대학교	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규정	규정 번호 4-1-16 제정 일자 2001. 3. 1. 개정 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교무처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인 정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안산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4. 2.10., 2019.11.14.개정>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. <2014.2.10., 2019.11.14.개정>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4.20., 2021.8.20., 2023.3.30., 2024.2.22., 2024.3.20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회무(會務)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<2019.11.14.개정>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정년보장임용결정을 위한 의결 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.

④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⑤ 제4항에 의한 제척(除斥)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정수는 그 제척(除斥)위원수를 감(減)한 수로 한다. <2019.11.14.개정>

⑥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사기준) 정년보장 대상 교원임용여부 심의는 재임기간 중의 다음 각 호 사항을 참작하여 심사한다.

1. 교수(教授) 및 연구 능력
2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3.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능력과 자세
4.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준법정신
5. 국가 및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이나 참여도

제6조(심사자료) 정년보장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장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작성요령 및 심사기준 (별첨1)에 의거 다음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
가.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(별지 제1호 서식)

2.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

나.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

다. 연구실적물 심사조서 200%

라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<2019.11.14.개정>

제7조(정년보장임용대상)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수
2.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임용 대상 교수

3. 신규채용시의 임용기간(3년)이 만료되는 교수

제8조(정년보장임용교원의 정수) ①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(定數)는 법정 전임교원의 12% 이내로 한다. <2018.3.30.개정>

제9조(정년보장임용제외자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교원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 2.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직권 면직 해당자
 3.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평정 표(별지 제1호 서식)의 평정결과에 “부” 가 있는 자
- <2019.11.14.개정>

제10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01년 3월 1일 이전 재임용대상자는 연구실적률 100%로 한다.(종전 인사규정 적용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 다만, 2004년 10월 1일 승진대상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2조(위원회 구성)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1)

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기준

평정영역	평정항목
1. 교수 및 연구능력	(1) 교수기술 및 강의총실도
	(2) 전공분야의 연구능력(외국어 등)
	(3) 수업효과(학생반응 등)
2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습활동	(1) 연구실적(양 및 질)
	(2) 국내 외 학술활동 실적
	(3) 산학협동 실적 및 연구실적
3.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능력과 자세	(1)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
	(2)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
	(3)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
4.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준법정신	(1) 인격과 품위
	(2) 교직원간의 인간관계
	(3) 학생취업지도 능력과 자세
5. 국가 및 학교발전 참여도	(1)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
	(2)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
	(3) 학내행사 및 업무 협조도

(별지 제1호 서식)

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 평정표

평정자 : (인)

인적사항	소속학과		직명		
	성명		보직		
평정영역	평정항목		평정점		
			가	부	비고
1. 교수 및 연구능력	(1) 교수기술 및 강의총실도				
	(2) 전공분야의 연구능력(외국어등)				
	(3) 수업효과(학생반응)				
2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술활동	(1) 연구실적(양 및 질)				
	(2) 국내 외 학술활동 실적				
	(3) 산학협동 실적 및 연수실적				
3. 학생생활 및 취업지도 능력과 자세	(1)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				
	(2)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				
	(3) 학생 취업지도 능력과 자세				
4.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준법정신	(1) 인격과 품위				
	(2) 교직원간 인화관계				
	(3) 준법정신				
5. 국가발전 및 학교발전 참여도	(1)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				
	(2)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				
	(3) 학내행사 및 업무 협조도				
평정결과(가,부)					
종합의견					